

2020 투명하고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한 연구비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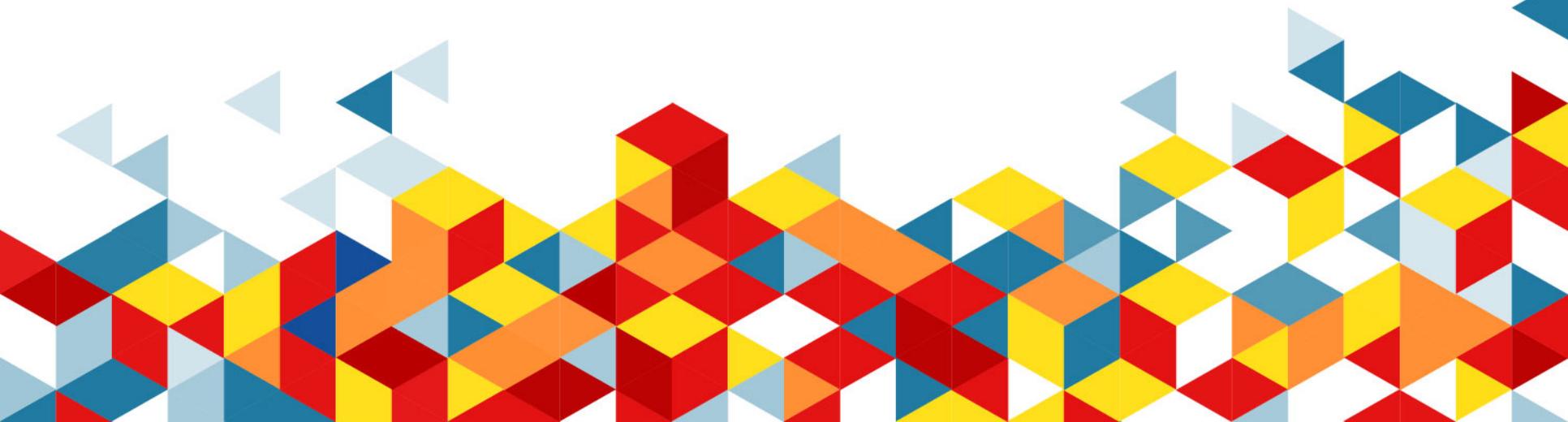
올바른 연구비 집행 교육

일 시: 2021. 1. 13.(수) 13:30~15:00

참여방법: YouTube '청주대학교산학협력단' 구독

대 상: 교외연구과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연구소, 사업단 포함)

주 최: 청주대학교산학협력단



산학지원팀 소개

김미영(내선번호 7906)

- SEED MONEY 관리
- 인센티브 관리 및 지급
- 민간용역 사업 관리
- 해외마케팅지원사업 관리

홍성임(내선번호 7912)

- 교육부 R&D 과제 관리
- 세무신고 및 급여관리
- 회계관리(회계원장, 월결산 등)

김민서(내선번호 790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과제 관리
- 중소벤처기업부 R&D과제 관리
- 정부·지자체 보조금 사업 관리

박수정(내선번호 7907)

- 정부·지자체 용역 과제 관리
- 기타부처(식약처/농림부/국토부/보건복지부 등) R&D 과제 관리
- 산업통상자원부 과제 관리



CONTENTS

01 산학협력정보시스템 소개

- ❖ Open-Innovation 기반 산학협력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

02 공고 조회

- ❖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 ❖ 종합정보시스템-공고조회

03 올바른 연구비 집행 방법

- ❖ 연구비 사용 원칙
- ❖ 비목별 부당집행 기준
- ❖ 연구비 부당집행 감사 사례

02

광고 조회

- ❖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
-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 ❖ 종합정보시스템-광고조회

02 2021 정부 R&D 온라인 부처 합동설명회

❖ 온라인 부처 합동설명회: 2021. 1. 18.(월) ~ 1. 20.(수)

NAVER TV, 카카오채널, YouTube 에서 실시간 온라인 중계

날짜	시간	내용	비고
1.18 MON	13:30-13:40 '10	개회사, 축사, 인사말씀 등 ※ 영상으로 진행	과학기술혁신본부장, KISTEP 원장
	13:40-14:00 '20	'21년 정부 R&D예산 주요특징	과기정통부
	14:00-15:25 '8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 사업 설명	ICT 분야
	15:25-16:50 '8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 사업 설명	과학기술 분야
	17:00-18:00 '60	교육부 R&D 사업 설명	
1.19 TUE	10:30-12:30 '120	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 설명	
	13:30-15:30 '120	중소벤처기업부 R&D 사업 설명	
	15:40-17:10 '90	보건복지부 R&D 사업 설명	
1.20 WED	10:00-12:30 '140	농림축산식품부/농진청/산림청 R&D 사업 설명	
	13:20-15:00 '100	환경부 R&D 사업 설명	
	15:00-17:00 '120	국토교통부 R&D 사업 설명	
	17:00-18:00 '60	해양수산부 R&D 사업 설명	

02 R&D과제 · 사업 공고조회 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각 부처 및 과제관리기관의 국가R&D공고를 종합 제공하는 서비스
 - 국가R&D 통합공고 서비스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거 하여 국가R&D 공고 정보를 NTIS에서 수집하여 제공 중
- R&D 과제 및 사업 공고 조회 방법: NTIS(www.ntis.go.kr) 접속 → 과제참여 클릭
→ 국가R&D통합공고 클릭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 조달업무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선진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전자계약-전자지불)
 -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정보고 공고되고, 1회 등록만으로 어느 기관 입찰에나 참가할 수 있는 공공조달 단일 창구 역할 수행
- 모든 공공기관의 용역과제 조회 가능

[용역 과제 및 사업 공고 조회방법]

- 나라장터사이트(www.g2b.go.kr) 접속

- ① 입찰공고검색 클릭
- ② 공고게시일 지정
- ③ 검색버튼 클릭

(공고명은 따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02 R&D과제 · 사업 공고조회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과제 · 사업 공고조회 방법

교수서비스>교수서비스>연구과제>공고정보조회



종합정보시스템

한국어

28분 4초

로그인연장

로그아웃

교수서비스 ①

교수서비스

- 학부수업&성적
- 대학원
- 학생지도
- 연구과제 ②
 - 공고정보조회 ③
 - 연구과제관리
 - 실행예산신청
 - 참여연구원신청
 - 과제변경신청
 - 특별연구과제신청
 - 특별과제변경신청
 - 특별과제연구결과보고신청
 - 일반연구과제계획서변경신청
 - 일반연구과제계획서변경신청
 - 결과보고및연구지원비신청

공지사항

공고정보조회 x

공고정보조회(rs_6010202_v) ④

공고년도 2019 제목

공고정보 목록 181 건

No	공고년도	공고번호	제목	주제어	게시자	게시일자
1	2019	20190181	[농촌진흥청] 2020년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경기 공모		김혜림	2019-10-28
2	2019	20190180	『충북대학교 강의평가 제도 개선 용역』 안내		박수정	2019-10-25
3	2019	20190179	2020년 제1차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공고		박수정	2019-10-22
4	2019	20190178	[식물의약품안전평가원] 2020년 식물의약품안전처 제1차 출연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김혜림	2019-10-22
5	2019	20190177	[교육부] 학생정신건강센터지원 사업 3단계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안내	공모	김혜림	2019-10-22
6	2019	20190176	2020년도 「지역간 건강격차 원인규명 및 해결방안 개발」 사업 참여 희망기관 재 공모		박수정	2019-10-18
7	2019	20190175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도 제2차 산업기술 R&D 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모		김미영	2019-10-15

공고 상세정보

공고번호 20190181 공고년도 2019 게시자 김혜림 게시일자 2019-10-28 주제어 공모

제목 [농촌진흥청] 2020년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경기공모 알림

내용

농촌진흥청에서는 대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현장애로기술 해결, 미래 선도 유망 기술 개발 및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추가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가. 사업명 : 2020년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나. 공모과제 : 농업용 바이오플라스틱 분해 미생물 선발 및 활용기술 개발 등 394과제
 다. 공모차격 :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대학, 산업체, 국공립, 민간연구소, 농업기술원 및 센터 등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할 수 있는 소속기관에 제한 없이
 라. 공모 및 접수 : 2019. 10. 24. (목) ~ 11. 22. (금) 18:00까지
 마. 공모처 : 농촌진흥청 종합관리시스템(ATIS, http://atis.rda.go.kr)
 바. 공모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종합관리시스템 공지사항 참조

붙임 1. 2020년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경기공모 공고문 1부.
 2. NTIS 유사중복성 검토 서식 1부.
 3. 과제제안요구서(RFP) 검색방법 및 연구과제 응모방법 1부. 끝.

첨부파일 목록 4 건

No	파일명	자료명	다운로드
1	2020년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경기공모 공고문(최종)		다운로드
2	2020년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경기공모 알림(공문).hwp		다운로드
3	NTIS_유사중복성검토 서식.xls		다운로드
4	과제제안요구서(RFP) 검색방법 및 연구과제 응모방법		다운로드

03

올바른 연구비 사용 방법

- ❖ 연구비 사용 원칙
- ❖ 비목별 부당집행 기준
- ❖ 연구비 부정집행 감사 사례

03.1 연구비 사용 원칙

연구계획 확인



- ① 연구비는 해당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한 용도로 연구계획에 근거하여 계상하고 집행한다.
- ② 연구비는 해당 연구과제의 수행과 연구 목적 달성 용도로만 집행한다.
- ③ 연구비는 연구기간(협약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에만 사용한다.

사용내역 입증



- ⑦ 연구비는 연구비 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집행한다.
- ⑧ 연구비는 객관적인 증명서류(전자증빙 등)를 구비하여 집행한다.
 - (증명자료) 결의서, 영수증서(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등



관련규정 준수

- ④ 연구비는 해당 사업에서 명시한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 ⑤ 해당 사업의 관련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연구과제수행기관의 지급 기준에 따른다.
- ⑥ 특정 아이템에 대해 연구비 집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연구과제 수행기관의 책임부서(산학협력단 등)에 문의한다.



이해충돌 회피

- ⑨ 인건비·연구수당은 연구과제 참여율과 기여도에 비례하여 집행한다.
- ⑩ 연구비 집행은 공무(公務)이므로 사무(私務)와 명확히 구분한다.
 - 부득이 공무(公務)와 사무(私務)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명확한 근거에 따라 관련 비용을 분리하여 집행해야 한다.

03.2 비목별 부당집행 기준

❖ 부당집행 공통기준

①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수행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 보고 시까지 집행 완료된 직접비는 제외
(다만, 연구시설·장비비 중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제외)

- 수행기간 종료 후 보고서 인쇄비, 연구수당,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등은 제외

②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당집행금액으로 통보한 금액

③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금액

④ 연구비카드(또는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다만, 「공공관리규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⑤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허위로 한 금액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직접비

⑦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연구개발에 재투자,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 강화 및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⑧ 환급 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금액

03.2 비목별 부담집행 기준

❖ 인건비 부담집행 기준

구분	부담집행 기준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받고 있음에도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② 참여연구원 또는 비영리법인의 연구부서 소속 연구지원인력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③ 참여연구원 또는 비영리법인의 연구부서 소속 연구지원인력을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④ 개인별 연봉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내부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⑤ 개인별 참여율 130% 초과 계상 금액(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⑥ 박사후연구원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없이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
외부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⑦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⑧ 연구수행기관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⑨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한 금액 ⑩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⑪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인건비 계상 승인내용과 실집행액이 다를 경우 변경내역을 원 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 ⑫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제 참여계약 체결 없이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 ⑬ 소속기관 또는 타 기관에서 인건비(급여)를 받고 있는 타 기관 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 해당 인건비(급여)와 총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 받는 학생인건비의 합계가 학생인건비 지급단가를 초과한 금액 ⑭ 박사후연구원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없이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⑮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하지 않은 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

03.2 비목별 부당집행 기준

❖ 학생인건비 부당집행 기준

구분	부당집행 기준
공통	①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한 금액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지정기관	①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초과집행 금액 ② 월별 참여율 100% 초과집행 금액 ③ 연구참여확약서에 명시된 지급액과 다르게 지급한 금액 ④ 학생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⑤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게 지급한 인건비 ⑥ 학생연구원의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⑦ 소속기관 또는 타 기관에서 인건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인건비(급여)와 총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 받는 학생인건비의 합계가 학생인건비 지급단가를 초과한 금액

03.2 비목별 부당집행 기준

❖ 연구시설·장비비 부당집행 기준

구분	부당집행 기준
<p>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②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보유 연구시설·장비·공간에 대한 임차료 ③ 원래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시설의 유지보수비 ④ 최종(단계) 종료과제에서 연구종료일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검수완료일)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 및 부수기자재 구입비 ⑤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 을 첨부하지 않은 3천만 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 구입금액 ⑥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승인 없이 구입한 3천만 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 및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구입한 1억원 이상의 장비 ⑦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미계상된 3,000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비를 전문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집행한 금액

01.2 비목별 부당집행 기준

❖ 연구시설·장비비 부당집행 기준

구분	부당집행 기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	⑧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거래 금액(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⑨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구입비를 현물 계상 시, 구입한지 5년을 초과하였거나, 수행기관의 회계 기준에 따른 내용연수가 협약기간 종료일 이전이거나, 구입가의 2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전액 또는 그 차액 ⑩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을 연구비 집행금액에서 제외하지않은 경우 ⑪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구입비를 현물계상 시 수행기관 장부가가 아닌 취득가로산정한 경우 ⑫ 간접비성 경비인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 유지보수비, 공동연구환경 구축비 ⑬ 연구개발수행기관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발한 시설·장비에 고정자산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

01.2 비목별 부담집행 기준

❖ 연구재료비 부담집행 기준

구분	부담집행 기준
시제품· 시작품· 시험 설비의 제작 경비	①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제작된 시작품의 제조비용(다만, 단독판매처, 독보적 제작 기술 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시약· 재료구입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①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구입한 시약·재료 구입비(다만, 단독판매처, 독보적 제작 기술 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② 원래 연구 개발 계획서 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산처리 및 관리비(단, 전문기관이 소관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제외)

01.2 비목별 부당집행 기준

❖ 연구활동비 부당집행 기준

구분	부당집행 기준
<p>국내외 출장여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② 수행기관의 여비규정 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기준을 이종으로 정하여 과다 지급한 금액 ③ 실비에 의한 여비지급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④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및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 급한 경우 해당 식대 ⑤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 여비
<p>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 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및 수수료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문구독료, 명함(첩)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 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다만,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험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② 기관운영 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01.2 비목별 부담집행 기준

❖ 연구활동비 부담집행 기준

구분	부담집행 기준
<p>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학회·세미나, 세미나 개최비, 회의장 사용료, 논문 게재료,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전문가 및 일용직 활용비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②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 가능하지만 수행기관 사정으로 환급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③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등 ④ 연구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⑤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⑥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최종단계 연구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⑦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01.2 비목별 부당집행 기준

❖ 연구활동비 부당집행 기준

구분	부당집행 기준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 및 비영리법인의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	①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시 제외*) * 2014. 8. 12 이후 협약 체결하는 과제부터 적용 ②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③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④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⑤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로 집행된 금액 ⑥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 ⑦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식대
기기 및 <u>소프트</u> 웨어의 구입·설치·임차· 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① 최종(단계) 종료과제에서 연구종료일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검수완료)되지 않은 기기 및 <u>소프트웨어</u> 구입비

01.2 비목별 부당집행 기준

❖ 연구수당 부당집행 기준

구분	부당집행 기준
연구수당	<p>①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p> <p>②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p> <p>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개인별 최대 지급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p> <p>④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질행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p> <p>⑤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퍼센트포인트 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text{연구수당 지급액} \times (\text{연구수당 집행비율} - \text{직접비 집행비율}^* - 20 / 100)]$ * 통합 EZbaro 적용사업: 전년도 이월금 중 직접비 사용금액 및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사용금액(연구수당집행액 제외)을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으로 나눈 값의 비율 * 통합 RCMS 적용사업 :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사용금액 (연구수당 집행액 제외)을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으로 나눈 값의 비율</p> <p>⑥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p> <p>⑦ 연구수당을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공동관리 해당 금액</p> <p>⑧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한 금액</p>

01.3 연구비 부정집행 감사 사례

❖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인건비 키워드: 인건비 공동관리 및 임의사용

■ 법 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 유 형 : 2017. 9. 11./ 사기

■ 내 용

서울 모 대학교 치의예과의 A교수는 MRC 센터장으로 근무하며 정부기관과 대학 등의 R&D 과제를 수탁 받아 연구비 전체에 대한 청구와 집행을 총괄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및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사업 처리규정 등에 따르면 연구비는 비목별 용도 외에 사용될 수 없으며, 특히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 관리를 금지하고 해당 학생연구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A교수는 관리규정 등에도 불구하고 학생연구원에게 인건비 지급용 통장과 체크카드를 받아 인건비를 공동 관리하였고 상당액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또한 이미 퇴직한 연구원이 재직 중인 것처럼 꾸며 인건비를 지급받아 편취했다. 이렇게 산학협력단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하거나 가로챈 금액은 약 1억 8,000만원에 달한다.

01.3 연구비 부정집행 감사 사례

❖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인건비 키워드: 학생인건비 부풀리기

▣ 법 원 : 대구지방법원

▣ 유 형 : 2018. 9. 12./ 사기

▣ 내 용

경북 모 대학교의 A 교수는 2006년경부터 단독 연구실을 운영하고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도 선정되어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청구와 집행 권한을 갖게 되었다. 그는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들과 함께 각종 국가 연구개발과제 연구활동을 수행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인건비 공동관리 행위가 금지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A 교수는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한 뒤 일부를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아 연구실 운영비와 회식비 등 연구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학생연구원들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은 금액은 총 577회에 걸쳐 약 3억 9,000만원 가량이다. 비록 이렇게 돌려받은 금액 대부분이 연구실 운영비로 사용되었고, 일부 피해회복과 함께 상당액의 변제가 예정되었지만, 범행기간이 길고 액수가 많다는 점에 따라 법원은 A 교수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01.3 연구비 부정집행 감사 사례

❖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처분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15년(5년+5년+5년) <과제 별로 처분>
- 연구비 환수: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조성 전액
- 제재부가금: 규정에 따른 부과금액
- ※ 학생인건비 공동 관리 금액을 지도교수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동 관리 한 금액전체가 제재 처분 대상임

<제재부가금 부과 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6)>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	제재부가금 부과율
5천만원 이하	5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천5백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5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억7천5백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2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7억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250%
10억원 초과	20억2천5백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300%

01.3 연구비 부정집행 감사 사례

❖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연구활동비 및 재료비 키워드: 물품납품업체와 공모

■ 감사처분 : 교육부(회수, 고발 등)

■ 유 형 : 2018. 7월, 00대학교 종합감사

■ 내 용

000는 2015. 8일부터 2018. 5월까지 11개 연구과제에서 매형이 대표인 000에서 총 28건, 합계 106,719,100원의 물품을 직접 구입하고, 본인이 검수란에 서명하여 지출증빙서류로 제출 하였다. 또한 위 000는 2016. 9월부터 2018. 5월까지 4개 연구과제에서 총 6건, 15,643.000원의 물품을 납품 받지 않고도 000과 공모하여 물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 하여 지출증빙 서류로 제출하였다. 그리고 위 000 는 2017. 10월부터 2018. 5월까지 5개 연구과제에서 총 8건 총 2,520,000원의 VIPS상품권을 연구비카드로 구매하고 본인과 참여연구원들이 회의 후 식사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하여 지출증빙 서류로 제출하였다.

01.3 연구비 부정집행 감사 사례

❖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인건비 및 연구활동비 키워드: 허위 회의록 서명

■ 감사처분 : 교육부(회수, 고발 등)

■ 유 형 : 2019. 2월, 0000대학교 종합감사

■ 내 용

교수 2명은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회의비 61천원을 부당 수령하고, 교수가 연구과제 공동연구원인 조교에게 지급된 연구비 2,000천원을 다른 조교를 통해 전액 돌려받음

❖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연구활동비 키워드: 허위 회의록 서명

■ 감사처분 : 교육부(회수, 고발 등)

■ 유 형 : 2018. 5월, 00대학교 종합감사

■ 내 용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내부연구원들과 회의 후 식사했음에도 외부기관 소속원이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지출증빙 자료로 산학협력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회의비 부당집행 하였음(460건, 30,742,310원)

01.3 연구비 부정집행 감사 사례

❖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인건비 및 연구활동비 키워드: 허위 국내여비 청구

■ 감사처분 : 교육부(회수 등)

■ 유 형 : 2018. 4월, 00대학교 종합감사

■ 내 용

00과 교수 △△△이 총 103회에 걸쳐 신청한 출장일수 합계 284일 중 270일은 실제 출장지를 방문하거나 공무수행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중 204일(77건)에 대해 거주지 인근에서 사용한 주유 영수증, 학교와 거주지 간에 사용한 하이패스 영수증 등을 출장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여비 합계 14,116,10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음

❖ 분야: 과학기술분야 비목: 연구활동비 키워드: 전문가활용비 부당집행

■ 감사처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회수)

■ 유 형 : 2019. 6월,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야 합동점검감사

■ 내 용

연구책임자 000는 2017. 8. 1. 전문가활용비(자문료)를 지급하면서 당해연도가 아닌 이전 연도에 수행한 상담 9건에 대해 128만원을 부당하게 지출하였다.



Thank You

청주대학교산학협력단 | <https://www.cju.ac.kr/iacf/>